
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공고

예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2월 3일

예 천 군 수 

1. 법적근거 :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

2. 지원시설 :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

3. 사 업 비 : 120,000천원(보조 72,000 자부담 48,000)

- 보조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4. 지원한도액 (단위 : 천원)

총 액	보 조	자 부 담	비 고
3,000	1,800	1,200	초과분 자부담

5. 지원기준

가. 지원대상자

-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
-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, 환경개선부담금,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자 제외.

나. 우선지원 순위

-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
- 야생동·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
-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
-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
- 과수·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
-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
-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

6. 신청서류

가.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: 읍·면사무소에 비치

- 구비서류
 -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
 -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
 -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

7. 접수 및 선정 결과 통보

가. 접 수 처 : 해당 읍면사무소

나. 접수기간 : 2014. 2. 3(월) ~ 2. 28(금)

다. 선정방법 :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에 의하여 평가

라. 결과통보 : 개별통지

붙 임 :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. 끝.

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	
피해농작물			가해야생동물		
피해예방 시설	설치지역				
	시(군)		면	동(리)	번지
	종류				
	설치기간				
			~ (일간)		
설치비용			지원금액(설치비용의 60%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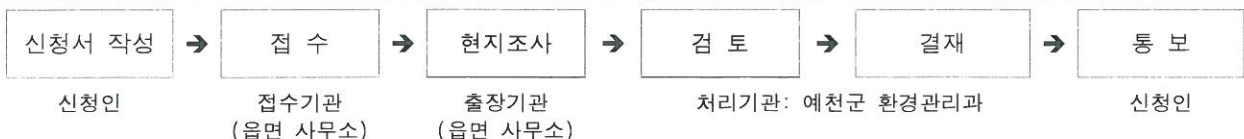
「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예 천 군 수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1.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.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.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4. 임대경작인인 경우 시설설치 동의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지방세 및 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: 확인자

(인)